

“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(경유)

참 조

제 목 「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 관련 의견수렴 알림



1. 최근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시·도지사 등이 부여하는 허가조건*을 위반 한 경우 부여되는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을 행정예고('24.9.24~10.11, 붙임 참조) 하였습니다.

* 시·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(「건설폐기물법」 제21조제5항 관련)
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개정안 주요내용 및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8일(화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1@naver.com)해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정(안) 주요 내용

○ 허가조건 위반 시 부여되는 행정처분기준 완화(안 별표3 제2호가목)

구분	행정처분기준			
	1차	2차	3차	4차
현행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영업정지 6월	허가 취소
개정(안)	경고	영업정지 1월	영업정지 3월	영업정지 6월

□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 (담당자)	개정안에 대한 의견 (찬성/반대/수정)	사유 (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)

붙임 「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안) 1부(협회 홈페이지 참조)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09/27

주임 **염경미** 팀장 **권병문** 부장 **강한서** 사무총장 **조정환** 회장 **박하준**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부-358 (2024.9.27.) 접수

우 06752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 (양재동, 일동홀딩스(주)사옥) 3층 / <http://www.koras.org>

전화 02-2046-5923 전송 02-3476-8464 / cped2110@koras.org / 공개